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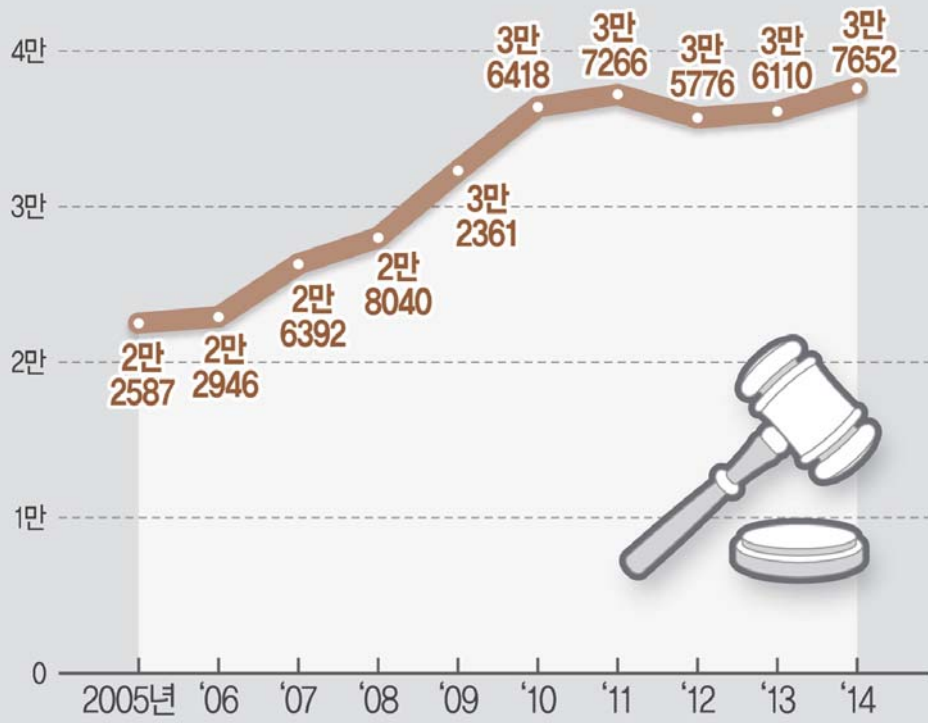
소송이 넘쳐나고 있다. 송사를 겪고 있는 국민이 8명당 1명꼴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부작용은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이다. 소송의 심판자인 판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 처리에 물리적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도가 '중재'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소송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훨씬 좋다. 중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 이에 뉴시스는 우리 사회 소송 실태를 진단하고 분쟁 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부각되는 중재의 필요성을 7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판사 1인당 사건수 600건... "일본 2배, 이젠 한계다"

[갈등, 중재로 풀자③]

年 소송 160여만건...판사 1명이 609건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저히 과도한 업무량
법관 대부분 '중노동' 일상...재판 질 저하
"야근·주말 근무 필연...힘에 부치기도"
"재판 당사자들에 시간 충분히 배정 못해"

연도별 상고사건 추이 (단위: 건)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
(단위: %)

56.8%

2014년 기준

자료: 대법원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소송 만능주의'로 인해 사법부 부담이 한계선으로 치달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소송으로 결국 재판의 질이 저하된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소송 증가에 따른 판사 1인당 재판량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1년의 경우엔 전국 법원에 총 150만 3696건의 소송이 접수돼 1인당 589건을 맡았다.

이어 2012년에는 총 157만 3652건으로 소송이 증가했고, 1인당 사건 수도 593건으로 늘었다. 또 2013년엔 총 160만 1662건의 소송이 접수돼 판사 1인당 599건의 사건을 맡았다. 2014년엔 접수된 소송이 166만 785건으로 늘었고 판사 1인당 연간 609건의 사건을 맡게 됐다.

우리 나라 법관들의 재판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미국 연방법원 법관당 사건은 416건으로 같은 해 한국 판사에게 비해 100건 이상 낮았다.

또 독일은 2012년 기준 법관 1인당 맡은 사건이 210건에 불과했고, 일본은 같은 해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353건에 그쳐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상급심에서도 소송 수는 증가하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상고사건 수는 2005년 2만 2587건에서 2009년 3만 2361건에 이르렀다. 2014년에는 3만 7652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 기준 대법관 12명(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제외)이 각 3137건의 사건을 처리한 셈이 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는 이유는 소송으로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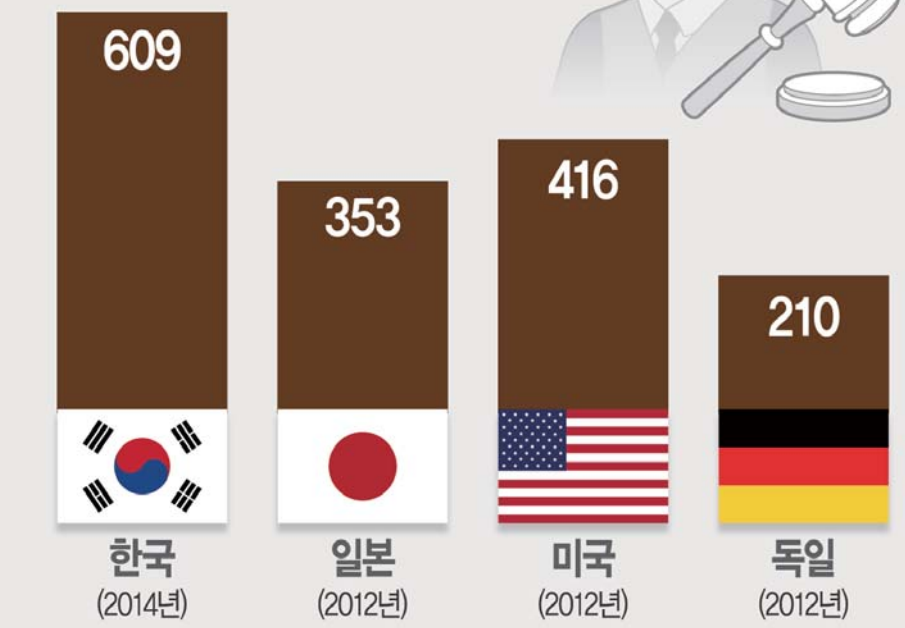
소송이 많아져도 재판이 크게 지연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 보니 굳이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이 2017년 10월 발표한 '기업환경경쟁력 보고서 2018'에 따르면 한국에서 재판 접수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0일로 조사됐다. 일본(360일), 미국(420일), 독일(499일) 등보다 짧은 수치다.

비용도 저렴하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 민사 소송 비용은 소가(소송 목적 가액)의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3.4%, 미국은 30.3%, 독일은 14.4%로 집계됐다.

소송이 계속 증가하면서 법관들 업무 부담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고

판사 1인당 사건 수 (단위: 건)



자료: 대법원

있다.

2014년 기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56.8%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해 진원합의제(대법관 13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 사건은 14건에 불과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문에 기각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선고 절차도 없이 통지문만 송달되는 형식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 입장에서 불만이 나오게 된다.

결국 소송 증가로 인한 피해는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사건 수와 상관없이 소송을 같은 시간 안에 종결된다 보니 사건 당사자가 충분히 의견을 낼 기회가 줄어들어 결국 재판 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013년도 기준 27%에 그쳤다. OECD 회원국 평균인 54%의 절반 수준이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는 소송 낭비 현상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재경지법 소속 한 판사는 "사건이 많아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필연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다"며 "하루에 너무 많은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힘에 부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간에 쫓겨 재판 당사자들에게 말할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기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판사들이 진행하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는 일선 판사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뉴시스



지역공감·미래상조·정민적심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